

##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

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기간제 근로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2월 6일  
국립고궁박물관장

### 1. 최종합격자

분야	면접 응시번호	성명	휴대폰 뒷자리
조사·연구	1번	윤○○	4037

\*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채용계약 체결 후 퇴직 발생 시 예비 합격자를 선발함

### 2. 임용일: 2025. 2. 10.(월)

\*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

### 3.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안내

가. 제출기한: 2025. 2. 10.(월)

나. 제출장소: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사무실

다. 제출서류

- 채용신체검사서(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확인서) 1부  
\*(경로) '국민건강보험' 홈페이지 → 건강in → 나의건강관리 → 건강검진정보 →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(직장제출용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\* 붙임1 양식(3쪽)에 작성
- 주민등록등·초본 각 1부 \*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
-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(상세) 각 1부
- 최종학력증명서 1부
- 부패방지권익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 \* 붙임2
- 반명함판(3×4cm) 사진 이미지 파일(jpg)
-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(급여지급용 계좌)

-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

#### 4. 공지사항

- 가. 합격통보 후에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,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.
- 나. 신원조회 및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실시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,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자 및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☎ 02)3701-7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5. 채용서류 반환 안내

- 가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<붙임3> 서식의 반환청구서를 방문, 팩스(02-736-0775)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거나 방문 시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.
- 다.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보관하게 되며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 처리할 예정입니다.

- 붙임 1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- 2.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 1부
- 2.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. 끝.



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## 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

## 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